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514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7. 21. 선고 2019구합1312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다가 이를 철회한바, 취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해제계약서 및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 11. 24.)로부터 60일 이내인 2016. 12. 27.에 취득세 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유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 번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1)]

1) 원고들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2017.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1) 원고들의 제2주장을 인정하므로, 원고들의 제3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16. 11. 24.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화해조서·인낙조서(제1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제2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는 지방세에 관한 '경정 등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에서는 일반적 경정청구의 사유 및 요건에 관하여, 그 제2항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및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별지 관계 법령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위 조항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계약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내지 제한은 없다.

다만, 구 지방세기본법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령의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된 때가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계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지방세의 경우(구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통상적으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취득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지방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 원인이 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제한적으로, 위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취득세를 면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무상승계취득'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실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사유 발생에 관한 증명방법까지 구체적,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정증서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바, 위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조항 각 호에 열거된 서류들은 증명방법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하여 예시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만일 위 규정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한 증명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서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증명방법'에 있어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그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별다른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다른 지방세 세목'과 '취득세'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에 관하여, 위 조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취득일(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무상승계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등의 각 취지 참조), 구 지방세법령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통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무상승계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점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그 법적 효과의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위와 같은 관점에서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는 무상승계취득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취득일(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고, 그 증명의 방법(서류)에 관하여는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취득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취득세와 같은 유통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는 계약해제 시 후발적인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는 점(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면할 수 있는 요건을 다른 지방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그 원인이 된 계약이 '취득일(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되, 그와 같은 계약해제 사실의 증명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에 의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2, 3, 4,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6. 11. 24.부터 60일 이내인 2016. 12. 27.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들은 2016. 12. 2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원고 A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해제계약서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또한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해제계약서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 계약일(2016. 11. 24.)로부터 60일 이내인 2016. 12. 27. 해제된 사실'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후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2)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2017.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끝.